

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(제53조제4항 관련)

가. 일반건강진단의 합격판정 기준

검사항목		판 정 기 준
(1) 시력	갑 판 부 선 박 직 원 및 당 직 부 원	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.5 이상일 것
	기 관 부 선 박 직 원 및 당 직 부 원	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시력을 통합한 교정시력이 0.4 이상일 것
	통신사	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.4 이상일 것.
(2) 체격		심한 신체의 박약,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그 밖에 선박내의 노동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
(3) 질병	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질환, 폐, 늑막, 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 것
(4) 청력		선장 및 갑판부 선원에 있어서는 두 귀 모두, 그 밖의 해원에 있어서는 한 귀 이상이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. 다만, 선원으로서의 종사경력에 비추어 관련 직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.
(5) 색각		선장, 기관사, 통신사, 갑판부 당직자 및 운항 당직자는 적색, 청색, 황색, 녹색의 구분이 가능할 것(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)
(6) 운동기능		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·손·팔뚝 또는 신체 각 부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. 다만,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.
(7) 병후쇠약		병후의 쇠약에 따라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
(8) 혈당		공복시 125 mg/dl 이하일 것
(9) 간장 - SGOT		50 IU/L 이하일 것

- SGPT	45 IU/L이하일 것
※ 비고 (1) 검진 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. (2) 위 표의 검사항목 중 시력과 관련하여 두 눈 중 최소한 한쪽 눈의 경우에는 안구질환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.	

나. 특수건강진단의 합격판정기준

검 사 항 목	정 상 기 준 치	판 정 기 준
1. CBC(빈혈)		검진 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.
- RBC	4.2~6.3	
- Hb	남자 12.0 이상, 여자 10.0 이상	
- Hct	36.0~52.0	
- MCV	79.0~96.0	
- MCH	26.0~33.0	
- MCHC	32.0~37.0	
- WBC	4.0~10.0	
2. RPR(VDRL) (매독검사)		
3. 소변검사		